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27호(그2)

2021.10.21.(목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591호 동대문종합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	2
-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91호

동대문종합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

동대문종합시장 내 코로나-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서울특별시

1. 적용지역 : 동대문종합시장 전 지역
2. 기 간 : 2021. 10. 21.(목) ~ 별도 해제 시까지
3. 처분대상 : 동대문종합시장 내 모든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
 - ※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구역 내 도·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
[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(횟수, 완료여부)와 관계없이 검사]
4. 처분 내용
 - 동대문종합시장 내 모든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(선제검사)을 받을 것
 - ※ 역학조사 등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
 -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미확인된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출입 및 거래 참여를 제한
5. 처분사유 :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동대문종합시장에 대한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
6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3호 및 제3항
7. 효력발생 시점 : 고시 즉시 효력 발생
8. 검사장소 :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 등

9. 검사비 : 무료

10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
-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및 같은 법 제81조 제10호(2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고발(벌금) 조치될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1. 불복절차 등

-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※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

12. 문의처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(02-2133-5544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